

의안 번호	872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 검 토 보 고
----------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11. 12. 1(목) ·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1. 12. 5(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1. 12. 9(금)

## 2. 제안이유

- 당초 쌈지문화공간 도시계획시설이 『소공원』으로 결정(‘10. 7. 8)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대상이었으나,
- 소공원으로는 쌈지문화공간 구성에 한계가 있어, 도시계획시설을 『소공원』에서 『문화시설』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쌈지문화공간(문화시설)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3. 취득 사유

- 울산중앙상가 활성화 구역 내에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구성을 통하여 젊음의 거리와 단절된 상권을 연결하고 젊은층의 고객을 유도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4. 주요 골자

### 가. 계획의 총괄

#### ○ 취득대상 재산

- 토지 및 건물 : 성남동 190-54번지 일원

구분	취득구분	수량(m <sup>2</sup> )	금액(천원)	비고
계			<b>3,918,470</b>	
토지	매입	550	1,824,552	
건물	매입	745.59	1,093,918	
복합문화시설	신축	550	1,000,000	

### 나. 취득대상 재산현황

#### ○ 토지

연번	재산의 표시				감정단가 (천원/㎡)	매입금액 (천원)	소유자	취득사유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계			<b>550</b>	<b>550</b>		<b>1,824,552</b>		
1	성남동 190-110	대	175	175	3,004	525,630	한영부	문화공간조성
2	성남동 190-51	대	195	195	2,074	404,401	임영순	"
3	성남동 190-116	대	7	7	2,074	14,517	임영순	"
4	성남동 190-52	대	50	50	3,995	199,750	엄정영	"
5	성남동 190-53	대	46	46	5,135	236,210	임일호	"
6	성남동 190-115	대	30	30	3,995	119,850	엄정영	"
7	성남동 190-117	대	7	7	5,135	35,945	임일호	"
8	성남동 190-54	대	33	33	7,232	238,654	차성환	"
9	성남동 190-118	대	7	7	7,085	49,595	최순연	"

#### ○ 건물

연번	재산의 표시				감정단가 (천원/㎡)	매입금액 (천원)	소유자	취득사유
	소재지	구조	층수	연면적 (㎡)				
계				<b>745.59</b>		<b>1,093,918</b>		
1	성남동 190-110	철근조/ 브릭조	2층	244.98	1,130	276,665	한영부	문화공간조성
2	성남동 190-51	철근콘크 리트조	4층	381.61	1,275	486,547	임영순	"
3	성남동 190-52	목조	1층	36.36	2,089	118,316	엄정영	"
4	성남동 190-53	목조	1층	52.89	2,089	110,474	임일호	"
5	성남동 190-54	목조	1층	29.75	3,426	101,916	차성환	"

○ 복합문화시설

연번	재산의 표시			매입금액 (천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재지	구조물	연면적(m <sup>2</sup> )			
계			550	1,000,000		
1	성남동 190-54	1식	550	1,000,000	2011~2012	쌈지문화공간 신축

다. 사업계획

- 사업명 : 쌈지문화공간 조성
- 위치 : 중구 성남동 190-54번지 일원(성남프라자 앞)
- 사업기간 : 2010. 2. ~ 2012. 6.
- 규모 : 부지면적 550m<sup>2</sup>, 문화공간 조성
- 내용 : 공연장, 전시실, 컴퓨터 등 복합문화공간 조성

5.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항, 제4항
-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6. 참고 사항

- 2011년도 관리계획변경 총괄표 1부
-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 ○ 토 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매입금액 (천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b>계</b>			<b>550</b>	<b>550</b>	<b>1,824,552</b>		
1	성남동 190-110	대	175	175	525,630	2010~2011	문화공간조성
2	성남동 190-51	대	195	195	404,401	"	"
3	성남동 190-116	대	7	7	14,517	"	"
4	성남동 190-52	대	50	50	199,750	"	"
5	성남동 190-53	대	46	46	236,210	"	"
6	성남동 190-115	대	30	30	119,850	"	"
7	성남동 190-117	대	7	7	35,945	"	"
8	성남동 190-54	대	33	33	238,654	"	"
9	성남동 190-118	대	7	7	49,595	"	"

### ○ 건 물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매입금액 (천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재지	구조	층수	연면적			
<b>계</b>				<b>745.59</b>	<b>1,093,918</b>		
1	성남동 190-110	철근조/ 브릭조	2층	244.98	276,665	2010~2011	문화공간조성
2	성남동 190-51	철근콘크 리트조	4층	381.61	486,547	"	"
3	성남동 190-52	목조	1층	36.36	118,316	"	"
4	성남동 190-53	목조	1층	52.89	110,474	"	"
5	성남동 190-54	목조	1층	29.75	101,916	"	"

### ○ 복합문화시설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매입금액 (천원)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재지	구조	연면적			
<b>계</b>			<b>550</b>	<b>1,000,000</b>		
1	성남동 190-54	1식	550	1,000,000	2011~2012	삼지문화공간 신축



## 【 지방자치법 】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11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생략)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생략] 및 처분[생략]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생략]개별공시지가[생략],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

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 【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